상반기 소방법 위반 1107명 檢송치

소방청, 상반기 소방특사경 단속 결과 발표… 소방관 폭행ㆍ성희롱 89건

올해 상반기(1~6월) 소방법령을 어 겼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적발돼 검찰 에 넘겨진 위법자가 1107명에 달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강제추 행・성희롱을 한 시건도 89건이나 발

소방청은 2021년 상반기 소방특별사 법경찰(소방특사경) 단속 결과를 5일

소방특사경은 일반시법경찰(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소방 관련 7개 법령 의 위반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상반기에 864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사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위반이 있을 땐 1건으로 통합 집계한 것으로, 1년 전(745건)보다 16.0%(119건) 증가했다.

이 중 610건 1107명(개인 762명, 법인

전북도가 그동안 운영 중인 40개

공공형어린이집을 재선정, 공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제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가 인건

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

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

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영유이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전국적으로 2,200여 개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돼 관리되

공한다고 5일 밝혔다.

도이다.

고있다

345개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 치했다. 1년 전(601건 1007명)보다 사 건 수로는 1.5%, 피의자 수로는 9.9% 가가 늘었다

법률 유형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 법'위반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소방시설법'(282건), '소방시 설공사업법'(206건), '소방기본법'(73 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4 건) 순이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어 긴 사례는 없었다.

특히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공사업 법 위반 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34.9%(73건), 32.1%(50건)나 증가했는 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

전북도, 공공형어린이집 40개소 재선정

도내에는 이번에 재선정된 40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89개 공공형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

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

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우수한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기 위해 평가기준에 따라 3년

이번 재선정은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41개 공공형어린이집

그 중 40개 어린이집이 심사기준

을 통과함으로써 전북도의 공공형

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마다 재선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도내 총 89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민간 · 가정어린이집 대상 운영비 등 지원

시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98건 발생 했다. 전년(107건)보다는 8.4%(9건) 줄 었다.

소방관 폭행이 88건(89.8%)으로 가장 많았다. 기물 파손과 진로 방해는 각 3건(3.1%)씩 발생했고, 성희롱·강제 추행도 1건(1.0%) 있었다. 나머지 3건 은 기타로 분류된 사례다.

피의자의 소방활동 방해 당시 상태 로는 술에 취한 경우가 86건(87.7%), 정신 이상이 4건(4.1%)으로 나타났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시례는 8건(8.2%) 있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위 험물을 불법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 피해 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뉴시스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품질관리 수준을 가늠하

한편, 전북도는 이번달 보건복지

부로부터 공공형어린이집 18개소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모집공고 등

선정 절차를 거쳐 앞으로 110여 개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는 공공형어린이집이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1기에 최초

선정됐던 어린이집이 다수 재선정

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줬다"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안정적인 공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

/유호상기자

규모로 확충해 운영할 계획이다.

는 척도가 됐다.

혔다.



언택트 천사마라톤대회 기부금 전달

장이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있다.

5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전북이시이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성공기념 '언 택트 천사마라톤대회'기부금 전달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동수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장기요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권오진 전북은행 부행장, 류평 KT 본부장, 문종선 이태마스터스 대외협력본부 〈관련기사 16면〉

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전북도, '태양광 유지보수 인력양성 교육'총 2개 과정 운영 취업자 과정 29일까지 · 전문가 과정 9월 30일까지 교육 접수

전북도가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재생에너지산업 인 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 태양광 유지보수 인력양성 교육 을 진행한다.

도는 취업자 및 전문가 총 2개 과정 으로 운영하는 2021년 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 일 밝혔다.

취업자 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30 일, 전문가 과정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북 부안에 있는 전북대학 교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 (소장 김종일)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접수는 취업자 과정 8월 29일까

지, 전문가 과정은 9월 30일까지다. 이번 교육과정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시설・안전・행정관리, 드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유지보수 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취업자 과정은 취업 · 산업전환 희망

자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 전 문가 과정은 육상 · 수상 · 해상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심화교육 등으로 운영하다.

교육 참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 직자, 경력자, 취업 희망자 및 예정자 등 재생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

교육비는 무료이며, 각 과정당 20명 내외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누리집 (http://saemangum-job.or.kr)과 신재생 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063-580-1522)를 활용하면 된다.

도는 재생에너지 이려양성 교육을 통해 국내 태양광산업을 이끌 전문인 력을 키우고, 수요자 맞춤 인력지원 환경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고용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올해 5월부터 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3년까 지 1,200명의 전문인력 배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82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나윤화 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대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고려한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 고, 더 나아가 도내 취업 및 정착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안전'

도내 골프장 토양과 수질의 잔류농 약 검사결과 '안전' 한 것으로 확인됐 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 은 2021년 상반기 도내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규제대상인 맹・고 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 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 27개 골프장의 토 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 수)을 대상으로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에 대해 조사했다.

일부 골프장 잔디에 사용이 허용된 저독성 일반 농약 중 살균제 테부코나 졸 등 6종만 미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 됐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사 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기 중 골프장 토양과 수질 검사를 통해 고독 성 농약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할 계획"이라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이달 말 청년종합대책 발표··· 'N포세대' 대신 희망·성공"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기본법 시행 1년 기념··· "일자리·주거 등 포함대책"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이달 말 청 녀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일자리, 주 거, 복지 등 청년 삶 전체를 포괄하는 구체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 비스(SNS)에 공개한 청년기본법 시행 1년 기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를 컨트롤 타 워로 5년 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년정책을 심의 ·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청년이 민간위원으로 참 여한 청년정책조정위가 지난해 9월 출 범했고. 같은해 12월 향후 5년 계획이 담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

김 총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 행 정 최초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부족함이 많다. 이제 막 뿌리를 내렸으니 잘 가 꾸어 잎도 틔우고 줄기도 키워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청년' 앞 에 N포세대리는 좌절로 점철된 말 대 신, 희망과 성공의 단어가 자리 잡는 날까지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완주군 공고 제2021- 1179호

행단천 재해복구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행단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9조, 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 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범	광사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원입도지	삼 건	nix
행단천 제해복구 사업	원주군 소양면 신교리 함원	2021. 8. ~ 2022. 12	-하천정비 L-1.15km	58 % [×]	원인보지내 참 건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3. 열람기간 및 장소

- 다.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 08, 05,(목) ~ 2021, 08, 19(목) (15일간) 나. 열람장소 :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 주 소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전 화 : 063-290-2934 / 팩스 : 063-290-2064

- 다.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라. 이의신청방법 이어 1000 비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 신청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해 이의신청기한까지 재난안전과 담당직원에게 기계는 다리는 하기에 다리하고 있다. 기계에 다리는 하는 한가가 제단된 당한 다음 작업 제출하거나, 백스전송 또는 동기우편으로 제출 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 : 열람기간 내 09:00 ~ 18: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4. 보상시기
- ___.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 통보(2021, 08중순) 5. 보상절차 및 방법

- 가. 보상절차 및 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혐의취득 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및 지장물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나.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등기발송)
 - ① 협의(계약체결) 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계좌입금) ②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6. 보상가격

- 가. 보상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시 · 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가 그 구가 () 국가 그 전한 기계 등 6 6 6 7 기계 등 6 7 기
-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 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 할 수 있다.

7. 기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 나.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 다. 고스에서는 그 스마스 마스 마스 민이란 기 있는 다. 그 스케 만한 다 마시에 보고 되다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다.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할
- 계획입니다. 라.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으로서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소유자 및 관계인의 등기부등본 상 현 주소지로 통지되며 주소, 거소 불명으로인해
- 통지받지 못할 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063-290-29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5일 완주군수

전주시 공고 제2021-1973호

전주 도시관리계획(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해령 제2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 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子是	도면변호	면 최(㎡)			भी उद्	
		기정	변경	변경후	-1 -22	
변경	侵-12	10,933.9	김)2,645.0	8,288,9	필지의 분할·합병 허용	
변경	이전1	21,029.0	중)2,645.0	23,674.0	될지의 분할·합병 불가	

1) 변경내용 : 클러스터12용지 10,934㎡ 중 2,645㎡를 분할하여 이전공공기관1 용지로 변경 나.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5.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가,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47)
- 나. 관련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다. 의견제출방법: 공람장소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우편, 팩스(063-281-2615), 이메일(elev77@korea.kr)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상기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하였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6일 전주시장